

2022년 제2회 충남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공모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따른 차별화된 훈련과정을 적시 공급하고자,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을 공모하오니 유관 훈련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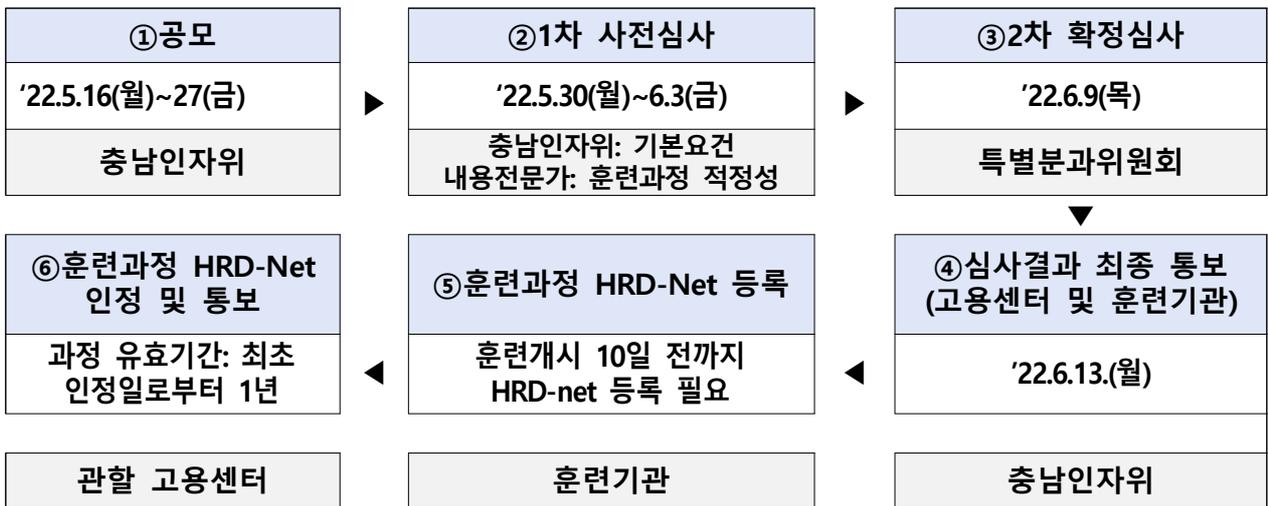
- 공모 기간: 2022. 5. 16.(월). ~ 27.(금)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과정 유효기간: HRD-net 훈련과정 인정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주요 지원내용
 - (**훈련기관**) NCS 지원단가의 130% 기본지원(훈련비 심사 및 정산 없음),
* 육성산업·직종의 경우 300%까지 지원(훈련비 심사 및 정산 있음)
훈련과정 편성시 NCS 비율 미적용
 - (**훈련생**) 1회 한정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자비부담 없음)
- 공모 참여 가능 훈련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기관
 -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대학, ③평생교육시설, ④평생직업교육학원,
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타 법령에 따른 훈련실시 가능 시설 및 기관
- 개설가능 훈련(‘사업 운영 지침’ 반드시 참조)
 -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정한 지원·육성산업대상 NCS직종에 해당하는 재직자의 고용유지 또는 재직자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 과정
 - *그 외 NCS직종은 훈련기관에서 자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

〈심사 우대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과정은 심사 시 가점 부여

- 훈련분야: 육성산업 · 직종 단기과정(350시간 미만)
- 훈련유형: 재직자 대상 고용유지훈련

○ 사업 추진 절차



○ 유의사항(그 외 세부 사항은 '사업 운영 지침' 의 '4.유의사항' 참조)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시 훈련기관에 사전 통보
- 훈련기관 코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심사결과 최종 통보일 이전까지 훈련기관 코드 발급을 받아야함(<http://www.hrd.go.kr> 홈페이지에서 훈련기관회원 가입>마이서비스>행정지원 이용신청)
- **훈련과정 최초 개시일**은 고용센터의 HRD-net 승인 일정을 고려하여 **심사결과 최종 통보일 10일 이후**로 할 것(심사결과 통보 이후 **1개월 이내 개설할 것을 권고**)
- 훈련기관은 **심사결과 최종 통보일 이전까지 훈련과정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없음**
- 훈련방법은 **집체훈련과정**으로 한정
- 훈련과정명은 기존 통합심사과정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고용유지] 또는 [전직 및 취·창업] 문구를 훈련과정명 앞에 포함시켜야함
- ※ 예시: [고용유지]훈련과정명 또는 [전직 및 취·창업]훈련과정명
- 훈련기관에서 **기 운영 중인 통합심사 훈련과정 및 심평원 심사 시 부적합 판정 받은 과정과 유사(훈련과정명, 훈련시간, 목표, 커리큘럼, 교재 등)**할 경우 **부적합 판정**됨
- ※ 특히 통합심사 과정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비NCS**로 구성하고, **NCS**학습모듈은 **가급적 배제**
- 훈련가능인원은 과정 유효기간(1년) 내에 목표로 하는 **목표 훈련인원**임

○ 제출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2. 5. 16.(월) ~ 27.(금)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cjpi_hrd@naver.com)
 - * 메일 제목에 기관명 반드시 기재
- 문의 : 전선두 책임연구원(Tel : 041-330-4921, Fax : 041-330-4990)

○ 제출서류

- ①~②는 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직인 또는 서명 포함)
- ①~②는 각 훈련과정별로 작성, 그 외 증빙자료는 '증빙' 폴더를 생성하여 폴더 내에 파일 수록

* 파일명 예시: 기관명_훈련과정명_훈련과정 인정신청서.hwp
 기관명_훈련과정명_훈련과정 실시계획서.hwp

공통	① (양식1)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1부 ② (양식2) 훈련과정 실시계획서 1부 ③ (양식3) 훈련과정 중복여부 자료열람 조회 동의서 ④ 훈련기관(시설) 증빙자료 1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지정시설</th> <th style="width: 50%;">제출 증빙자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법인·단체</td> <td>•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td> <td>• 해당 학교 학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생교육시설</td> <td>•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편성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td> <td>•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td> <td>•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td> </tr> </tbody> </table>	지정시설	제출 증빙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법인·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해당 학교 학칙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편성표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지정시설	제출 증빙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법인·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해당 학교 학칙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편성표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훈련기관 인증평가 미보유기관	⑤ (양식4) 임금체불 등 조회 동의서 ⑥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NCS 지원단가 300% 과정일 경우	⑦ 훈련비 산출내역서 및 관련증빙 1부												

[붙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운영 지침

[붙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운영 지침

2022. 5.

순서

1. 총칙	1
2. 주요 지원 내용	2
3. 개설 가능 훈련	3
4. 유의사항	8
5. 기타 지원 사항	13

〈참고〉

1. 고급 및 특화과정 심사 기준	15
2. 훈련비 산출내역서 작성 요령 및 예시	16
3. NCS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19
4. NCS 훈련수준	26

□ 추진 배경

-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 다만,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중앙(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체계는 지역별 차별성 고려와 훈련공급시기 측면에서의 한계가 지적
-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시범 사업 운영을 거쳐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
 - 이를 통해,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이 적시에 공급하고,
 - 국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무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21.8.17. 개정, ' 22.2.18. 시행)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의 운영을 담당하는 훈련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아울러, 본 지침은 2022년에 실시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 적용함

가. '훈련기관'의 참여 장벽 완화 및 훈련비 등 우대 인정

- (참여장벽 완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이면 허용
 - 단,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및 '조건부 유예' 판정을 받은 기관은 참여 불가

※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등 참조)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 또는 지정)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 (훈련비 우대) NCS 지원단가의 130% 기본지원(훈련비 심사 및 정산 없음)
 - 단, 육성산업·직종의 장기과정(350시간 이상)은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NCS 지원단가의 300%까지 인정(훈련비심사 및 정산 필요)
- (NCS 필수 적용 생략) 훈련과정 심사 시 NCS 훈련기준 적용 제외
 - NCS 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적용, 시설·장비기준 필수 적용되지 않음

나.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등 우대 지원

- (훈련비) 1회에 한정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자비부담 없음)
 - 인당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
(참여자 1인당 잔여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 차감)

- * 예1: 잔여계좌 한도가 300만원인 훈련생이 인당 훈련비 400만원 과정을 수강할 경우 계좌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
- * 예2: 잔여계좌 한도가 100만원인 훈련생이 인당 훈련비 400만원 과정을 수강할 경우 계좌한도에서 100만원만 차감
- 인당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
- ※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훈련생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단, 계좌한도가 남아있어야함)
- ※ 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트레이닝에서 전액지원 받은 인력이 있는 경우 제외
- (특별훈련수당) 육성산업·직종을 위한 장기(35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 외에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원(월 20만원)
 - 단, 육성산업·직종에 해당하는 ‘고급·특수과정’에 해당하며,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훈련생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3 개설 가능 훈련

-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정한 지원·육성산업대상 NCS직종에 해당하는 재직자의 고용유지 또는 재직자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 과정
 - ‘가. 훈련분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나. 훈련유형’ 중 하나를 선택

가. 훈련분야(택1)	→	나. 훈련유형(택1)
①지원대상산업·직종 ※지원단가: NCS 130%(훈련비 심사X, 정산 X)		①고용유지훈련 ※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 (재직자 계좌제 기준)
②육성산업·직종 ※지원단가: NCS 130%(훈련비 심사X, 정산 X) NCS 300%(훈련비 심사O, 정산 O)		②전직 및 취·창업훈련 ※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 (실업자 계좌제 기준)

가. 훈련분야(①~②) 중 택1 → 산업 및 직종 택1)

- ① (지원대상산업·직종)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경영 또는 고용상의 어려움이 발생 및 예상되어,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분야

- 아래 지원대상산업·직종 리스트를 참고, 지원대상산업(택1)에 해당하는 NCS 직종(택1)을 선택하여 훈련과정을 개발

※ 예: 기타식품 제조업(107) - 식품가공(210101)

- 리스트에 없는 NCS직종의 훈련과정 개설이 필요할 시 훈련기관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첨부

지원대상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중 택1)	지원대상직종 (NCS 소분류 중 택1)	
012 축산업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402 품질관리	230103 폐기물관리 230105 토양·지하수관리 230201 환경보건관리 230301 생태복원·관리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1 알코올음료 제조업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302 회계 100301 e-비즈니스	100302 일반판매 130101 음식조리 210101 식품가공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302 회계 100301 e-비즈니스 100302 일반판매 170201 석유·천연가스제조	170202 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 170203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 170302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170402 고무제품제조 230101 수질관리 230201 환경보건관리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703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170302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170303 바이오의약품제조 170304 바이오화학제품제조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090202 철도시설유지보수 140401 플랜트설계·감리 140402 플랜트시공 140705 양중기계운전 140706 건설기계정비 150101 설계기획 150201 철삭가공 150202 특수가공 150301 기계조립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150502 냉동공조설비	150603 자동차정비 150802 선체건조 150902 항공기제작 151001 사출금형 151002 프레스금형 151003 다이캐스팅금형 160102 금속재료제조 160103 금속가공 160104 표면처리 160105 용접 230502 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351 전기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90107 전기공사 190108 전기자동제어 230101 수질관리 230102 대기관리 230104 소음진동관리	230105 토양·지하수관리 230201 환경보건관리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230506 에너지관리 230602 산업보건관리
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230101 수질관리 230102 대기관리 230103 폐기물관리 230104 소음진동관리 230105 토양·지하수관리	230201 환경보건관리 230301 생태복원·관리 230401 환경경영 230402 환경평가 230602 산업보건관리
162 나무제품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412 토목 건설업	140101 건설시공전관리 140102 건설시공관리 140103 건설시공후관리 140201 토목설계·감리 140203 측량·지리정보개발	140301 건축설계·감리 140303 건축설비설계·시공 140501 조경 150101 설계기획 160104 표면처리

지원대상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중 택1)	지원대상직종 (NCS 소분류 중 택1)	
461 상품 중개업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6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67 기타 전문 도매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479 무점포 소매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201 총무 020202 인사·조직 020302 회계	020402 품질관리 050101 법무 050102 지식재산관리 080201 디자인 100101 일반·해외영업 110101 경비·경호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12 전기 통신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201 총무 050102 지식재산관리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190308 로봇개발	190311 3D프린터개발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5 정보기술영업 200106 정보보호 200107 인공지능 220101 출판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302 회계 050101 법무	100101 일반·해외영업 100202 부동산관리 100301 e-비즈니스 100302 일반판매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201 총무 020202 인사·조직 020302 회계 080201 디자인 140203 측량·지리정보개발 140301 건축설계·감리	140303 건축설비설계·시공 140601 국토·도시계획 140801 해양환경조사 140802 해양환경관리 190308 로봇개발 190311 3D프린터개발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5 정보기술영업 200106 정보보호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6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50101 법무 050102 지식재산관리 100202 부동산관리	100301 e-비즈니스 100302 일반판매 140501 조경 200106 정보보호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201 총무 020202 인사·조직	020302 회계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5 정보기술영업 200106 정보보호 220101 출판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201 총무	020202 인사·조직 020302 회계 060102 보건지원 070301 보육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020101 경영기획 020102 홍보·광고 020103 마케팅 020201 총무	020202 인사·조직 020302 회계 020402 품질관리

② (육성산업·직종) 충청남도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NCS 육성직종 분야

- 육성산업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NCS 직종을 선택

※ 예: 친환경 모빌리티 - 자동차제작(150602)

- (친환경 모빌리티)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친환경 정책 확대,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및 규제자유특구와 연관된 전후방산업 육성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육성직종 리스트(NCS 소분류)					
090101	자동차운전운송	150401	기계품질관리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140704	적재기계운전	150601	자동차설계	180103	섬유생산관리
140705	양중기계운전	150602	자동차제작	190108	전기자동차제어
140706	건설기계정비	150902	항공기제작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50101	설계기획	151002	프레스금형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50201	절삭가공	160101	금속엔지니어링		
150302	기계생산관리	160103	금속가공		

- (스마트 휴먼바이오) 기존 바이오식품 + ICT를 접목하여 가치사슬 측면에서 예방은 바이오 식품, 진단/치료는 의약품, 서비스는 뷰티/헬스케어 기기 등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

스마트 휴먼바이오산업 육성직종 리스트(NCS 소분류)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170103	화학제품연구개발	190108	전기자동차제어
140402	플랜트시공	170203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40704	적재기계운전	1703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210101	식품가공
140705	양중기계운전	170303	바이오의약품제조	230601	산업안전관리
150302	기계생산관리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240201	축산자원개발
170101	화학물질관리	180103	섬유생산관리		

-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중심의 전략수요 확대에 따른 품목 확대 및 차세대 기술전환을 통한 디스플레이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직종 리스트(NCS 소분류)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170103	화학제품연구개발	190108	전기자동차제어
140402	플랜트시공	170203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40704	적재기계운전	1703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210101	식품가공
140705	양중기계운전	170303	바이오의약품제조	230601	산업안전관리
150302	기계생산관리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240201	축산자원개발
170101	화학물질관리	180103	섬유생산관리		

나. 훈련유형(①~② 중 택1)

① (**고용유지훈련**)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이며, 재직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을 준수

**성과활용 지표: 모집률, 수료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② (**전직 및 취·창업훈련**)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이며, 실업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을 준수

**성과활용 지표: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전직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요건(통합심사)	
구분	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p>[훈련대상별 훈련과정 최소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계좌제: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 실업자 국가: 3개월 이상 1년 이하, 350시간 이상 • 재직자 계좌제: 2일 이상, 16시간 이상 • 사업주 위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이상, 8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강의실	<p>[훈련시설(강의실)의 최소 면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국가: 20인 기준 45㎡(1인 추가 시 1.5㎡) •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자 위탁: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해야함 ※ 최소 준수 여부 판단하고, 과정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실습장	<p>[실습실(실습장)의 최소 면적기준(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적용과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훈련과정이 분류된 NCS 직종상 훈련기준의 50% 면적 ※ 1명 추가 시 1인당 추가면적 기준 적용 ※ NCS 훈련기준상 기준인원이 10명 미만인 실습실의 최소면적은 기준 인원에게 필요한 시설면적의 100% 적용
기타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관련 법령 규정(고시),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 훈련과정의 성과 활용**

- ① '23년 이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사업운영기관(RSC 등)이 훈련과정 심사를 함에 있어 기존에 운영 이력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적정(승인) 여부를 판단
- ② 훈련기관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별도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23년 이후)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관의 역량평가*' 점수 산출

* 훈련기관별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등을 산출 및 평가하여, 저평가 기관은 사업 참여 배제

- (훈련방법 제한) 훈련과정은 **집체훈련과정**으로 한정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훈련실시
 -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심사·승인 이후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지침**」 등에 따라 변경가능
- (훈련과정명 차별화 필요) 훈련과정명은 반드시 기존 통합심사과정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하며, 아래 형식에 맞추어 신청
 - [고용유지]훈련과정명 또는 [전직 및 취·창업]훈련과정명
 - ※ **차별성이 낮고, 중복성이 높을 경우 심사 후 부적합 판정됨**
- (중복훈련 제한) 통합심사를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 등과 중복되는 훈련 과정을 본 사업을 통해 개설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심사 시 신청한 훈련기관이 기존에 운영중인 훈련과정 간 중복 여부(훈련과정명, 훈련시간, 훈련목표, 커리큘럼, 교재 등 종합판단)를 반드시 확인하며, **중복 과정은 부적정 판정**
 - 특히, 이전(최근 1년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통합심사에서 훈련내용·방법 등이 미흡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과 그 내용 등이 동일·유사한 훈련과정은 부적정 판정
 - * 예: 훈련기관 A가 개설하려는 훈련과정 B와 관련하여 ① 훈련기관 A가 통합심사를 거쳐 훈련과정 B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훈련물량 증대 목적**), ② 훈련기관 A가 이전 통합심사에 훈련과정 B의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판단을 받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훈련심사 우회 목적**)를 의미
- (실시가능 직종) 훈련기관은 유형에 따라 실시 가능한 훈련직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함
 - 다만, 직업훈련시설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시 가능 직종을 추가·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예상소요기간 1~2주, 법정처리기간 20일)

- (훈련가능인원 제한) 훈련가능인원은 훈련과정 유효기간 내에 목표하는 훈련인원이며, 심사 시 훈련기관의 역량, 기존 훈련실적 등을 참고하여 훈련가능인원을 조정 및 축소할 수 있음
 - 과정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훈련가능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자위와 협의 및 고용센터 승인 필요
 - 훈련가능인원 내에 회차추가는 자율적 운영
 - * 훈련정원 20명, 훈련가능인원 100명 승인됐을 시 10명씩 10회차 운영 가능
 - ** 훈련가능인원 미달성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훈련비 심사) 육성산업·직종에 해당하는 장기과정(350시간 이상) 중 NCS 지원단가 300% 과정은 반드시 훈련비 심사가 이뤄지며, 회계정산 대상이됨(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 ‘훈련실시인원(중도탈락자 포함) 수’ 기준으로 지급된 훈련비는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비목별 별도 정산 후 필요시 환수
 - * 훈련비 심사를 받은 훈련과정의 정산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용하되, 정산계획 별도 시달 예정

※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

- ①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 ② ‘훈련교·강사’, ‘훈련내용’, ‘훈련대상자’, ‘실습비’를 고려할 때 **고급·특수과정에 해당할 것**

< 고급·특수과정의 요건 >

연 번	요 건	세부 내용
①	훈련 교·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할 것(㉠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②	훈련내용	· 난이도가 높은 훈련과정(Level 5 수준 이상)일 것 ·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일 것
③	훈련 대상자	·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일 것 ·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일 것 · (자격증 등)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일 것
④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것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각 요건별 충족 여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조

⇒ ①~④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특수과정으로 인정

○ (훈련과정 인정제한) 직무능력향상 등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 <예시> ① "골프장 캐디 양성과정", "헬스트레이너 양성과정" 등은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인정 제한, ② "공인중개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자격과정 등은 자격시험과 관련된 지원 필요성이 적은 과정으로서 인정 제한 등

※ 인정제한분야 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

-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단,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호가목(사내대학), 나목(기술대학),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 ④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⑤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 ⑥ 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
- ⑦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과정 포함). 단, 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공통 법정직무훈련 과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취업서비스(전직지원) 관련 훈련과정

-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훈련시장 공급이 과다하거나 종사인력이 많아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분야의 과정 등
 -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 단, 재직자 계좌제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 또는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정

※ 외국어 훈련과정 관련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훈련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개설할 수 있음

* 재직자는 훈련 참여시 훈련비의 50% 국비 지원, 실업자는 미지원

○ 따라서, 외국어 습득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반적인 훈련과정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하여 개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정 제한

- (훈련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제외 대상(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용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금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NCS직종 편성) NCS 직종은 훈련과정 내용상 가장 많은 시간으로 편성된 직종이 해당되며,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 가장 유사·적정한 NCS직종 편성 필요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활용) 훈련기관이 HRD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한 방법은 HRD행정지원시스템 공지사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용자 매뉴얼’ 참조
- (훈련과정의 내용 변경)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하여 변경 인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훈련교·강사, 강의·실습실, 훈련장비·교재 등의 변경이 해당하며, 정원,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훈련장려금 >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참여자의 부담 완화 및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월 11.6만원 등)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22년 기준)

구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 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월 최대 11.6만원	월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원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원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6만원

< 특별훈련수당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월 20만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 (훈련과정) 개별 RSC에서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생계비 대부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음

※ '22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 ①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 ② (신청자격)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③ (대부한도) 1인당 월별 200만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 ③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충남지역 고용센터별 관할 지역 및 연락처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훈련비용 지급, 지도점검 등

-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041-620-7400): 천안, 아산, 예산, 당진
-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042-480-6000): 공주, 금산, 계룡, 논산
-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041-930-6200): 보령, 서천, 청양, 홍성, 부여
-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041-661-5600): 서산, 태안

※ 통합심사제도 상 '고급 및 특화과정' 심사기준 세부 내용 <예시>

- (신청자격) 우수훈련기관, 재직자 실적 보유 기관만 고숙련·신기술 훈련신청 가능
- (인정범위) 아래 ①, ②번 항목은 모두 충족하고, ③훈련대상자, ④실습비 중 1개 이상 추가로 충족할 경우 '고급 및 특화과정' 으로 인정

번호	구분	고급 훈련 (실업자, 재직자)	특화과정	
			중소기업특화 (사업주 위탁)	고숙련·신기술 분야 훈련 (사업주 위탁)
① (필수)	훈련 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해당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인정		* 산업현장실무 경력자 우대
② (필수)	훈련 내용	· 난이도가 높거나(Level 5 수준 이상) 타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과정 ※자격증 취득과정은 고급 및 특화과정에서 불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차별되거나 특화된 과정으로 판단 시 인정 가능	·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분야 (생산관리·품질관리, 기술경영) 중 특화과정(Level 4수준 이상) ※중소기업특화(사업주 위탁) 으로 훈련비 심사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는 반드시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 등록	· (고숙련분야) 일정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훈련 · (신기술분야) 법령 등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활용, 제품 또는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훈련 또는 20대 신기술분야훈련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2, 제18조의5에 의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 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 (20대 신기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 고숙련 또는 신기술과 관련된 실험(실습) 시간을 전체 훈련시간의 30% 이상 편성 * ①이론중심과정, ②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고급 자격과정이 아닌 경우, ③중소기업특화 대상분야, ④법정 교육과정 분야 제외
③	훈련 대상자	1) 선행학습 :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 2) 직무경력 :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 3) 자격증 등 :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 ※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인정		*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이상 참여 필수 (과정별 20%가 아닌 전체 회차를 합한 인원의 20% 이상이면 가능)
④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 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훈련비 산출내역서 작성 요령]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	증빙자료
	강사료	내부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강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과 퇴직급여로 산정 ▶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내부강사료 및 출장 여비는 실비로 인정. 단, 여비를 포함한 총 시간당 강사료는 7만원 초과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강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투입강사 당해연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월급여액 또는 연봉 포함) ▶ 기관 내부강사료 지급규정
		외부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강사와 특강강사로 구분하되 특강강사는 10시간 초과 불가 ▶ 특강강사 강사료는 심사위원의 결정으로 단가산정 ▶ 일반강사의 강사료는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로 산정하되, 강사여비를 포함하여 시간당 7만원 초과 불가 ▶ 외부강사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 등급 강사를 위촉하며 1인이 등급이 낮을 경우 강사료는 낮은 등급으로 책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사료 지급 규정 ▶ 외부강사 위촉계약서 (시간당 금액 명시)
교재비	교재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에 필요한 주교재에 대한 구입비용 ▶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 	▶ 2개업체 이상 견적서(구입 단가 명시)
		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에 필요한 주/부교재 제작 및 인쇄비용 ▶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 	▶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쪽당 인쇄비용 및 쪽수 명시)
실습비	실습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일반적인 사무용품 및 문구비용 제외 ▶ 고가품이거나 과다책정, 자산 성격의 품목은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재료비 산출내역서 ▶ 2개업체 이상 견적서(물품명 명시)
		현장실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생 현장실습에 발생하는 비용 ▶ 훈련기관이 현장실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비 산출내역서 ▶ 현장실습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직접비 (65%이상)	시설비	시설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임차 및 관리비용(보증금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 내부시설 (월임차료/20X훈련일수X훈련시설면적/총임차면적) ▶ 외부시설 외부에서 강의개설시 강의장 임대 실비 시간당 1만원, 1일 최대 8만원 한도 내 지원 ▶ 호텔 등 과도할 임대 불가하며, 프로젝트, 음향시설, 노트북 등 강의시설 임대료는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설감가상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유의 훈련시설을 사용할 경우 훈련시설 감가상각비 (취득금액/360X훈련일수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 (해당시설 감정가액/360X훈련일수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 ▶ 시간당 1만원, 1일 최대 8만원 한도 내 지원 	▶ 훈련시설의 취득금액 또는 감정금액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장비비	장비	장비임차비	▶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사용료로 최소금액 지원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관)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 X 훈련인원)	▶ 임대차계약서 또는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장비감가상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최소금액 지원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 X 훈련인원) ▶ 기관소유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장비로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감가상각비 (취득가액/60X장비사용일수/30) 	▶ 소프트웨어 계약서 또는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장비유지보수비	▶ 훈련기간동안 발생하는 훈련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최소금액 (월평균발생액/30X훈련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 산정 내역서 ▶ 훈련장비관리대장
기타 훈련비용	기타	보험료	▶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안전에 관련된 보험료 (훈련인원X인당보험료)	▶ 보험 가입 견적서
		기타 훈련비용	▶ 상기 직접비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성 입증하는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훈련비용 산출내역서 ▶ 관련 입증서류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	증빙자료
간접비 (35%이 내)	인건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참여인력 행정 및 상담인력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감인하여 산정 ▶ 훈련과정별 참여율은 50% 한도로 하며 월평균인건비는 월급여액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50만원 한도 ▶ 훈련과정별로 2인이상 참여 시 참여율의 합계는 50% 초과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총 인건비는 월평균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음 (월평균인건비X훈련시간/160X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인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투입인력 당해연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 2개 과정 이상 참여 시 과정별 참여율 내역
	홍보비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 광고비용 등으로 살비로 산정 ▶ 직접비의 10% 이내에서만 인정 	▶ 홍보비 산출내역서 (계약서 또는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운영 지원비	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살비 인정 ▶ 교통비, 식대, 숙박비 포함(내부강사는 강사료에서 산정) ▶ 내부규정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산정 	▶ 훈련기관 출장비 지급규정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관에서 발생된 전년도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등) (월평균공공요금/160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X훈련시간) ▶ 공공요금이 과정별로 구분되어 측정되는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 공공요금 발생액 지원 ▶ 기관부담 사회보험료는 내부강사 및 인건비 산정기준 준용하되, 내부강사 배율은 적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산정 내역서 (훈련과정에 배분 근거 포함) ▶ 직전년도 해당훈련시설의 월별공공요금부과내역서 ▶ 인원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납부현황
		사무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정에 운영에 소모되는 소모품 등을 살비로 산정 ▶ 자산 취득 및 입차비용은 불인정 	▶ 사무용품비 세부 산출내역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 사용료, 다과비, 자료 인쇄비 등 살비로 산정 ▶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사진 등이 명기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 전년도 회의비 지출내역 및 회의록 없을 경우 회의계획안 및 산출내역서
기타 간접 비용	기타 간접비용	▶ 상기 간접비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타간접비용을 제외한 훈련비의 10% 이내로 산정함	▶ 기타간접비용 산출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지원기준은 통합심사 자료집 준용

- 특강강사료 기준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시간당 한도액	25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자격	▶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이상 공무원	▶ 6급 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 임원급 ▶ 기업체 사정급 이상	▶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연구위원급 이상	▶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 부연구위원급 이상	▶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 대학 부총장급 이상	▶ 정교수급 이상	▶ 부교수급 이상	▶ 조교수급 이상
	▶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박사취득 후 즉시
	▶ 석사취득 후 17년	▶ 석사취득 후 12년	▶ 석사취득 후 8년	▶ 석사취득 후 4년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 경력 25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 경력 20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 경력 15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 경력 10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 포함)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5년(27 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 분야 현장경력 20년(22년) 이 상	▶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 분야 현장경력 15년(17년) 이 상	▶ 학사(전문학사)취득 후 동일분 야 현장경력 10년(12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30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25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20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15년

*특강강사료 지원기준은 통합심사 자료집 준용

[훈련비 산출내역 작성 예시]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세부내역	단가	수량	기타	
강사료	소 계					36,109,375
	내부강사료	최홍련 외 2명	29,766	400	150%	17,859,375
	외부강사료	홍장미 외 2명	45,625	400		18,250,000
교재비	소 계					1,900,000
	교재구입비	교재 A,B,C	19,375	80		1,550,000
	교재인쇄비	교재 가,나,다	4,375	80		350,000
실습비	소 계					8,410,000
	실습재료비	재료 A,B,C	19,167	60		1,150,000
	현장실습비	차량임차비, 식비, 위탁교육비				7,260,000
시설비	소 계					6,150,000
	시설임차비	시설 A,B,C				1,600,000
	시설감가상각비	시설 가,나,다				4,550,000
장비비	소 계					5,175,000
	장비임차비 및 소프트웨어사용료	장비 A	70,000	30	2개월	4,200,000
	장비감가상각비	장비 A,B,C				400,000
	장비유지보수비	장비 가,나				575,000
기타훈련비용	소 계					675,000
	재해보험료	보험종류	15,000	30	1개월	450,000
	기타훈련비용	다과, 문구비 등				225,000
직접비 합계						58,419,375
인건비	소 계					2,296,875
	인건비	윤관리 외 2명	2,552	900시간		2,296,875
홍보비	소 계					3,500,000
	홍보비					3,500,000
운영지원비	소 계					3,127,500
	출장비	관내 외 출장비	50,000	10회		500,000
	공공요금	공과금 등				1,307,500
	사무용품비	소모품비용 등	300,000	2개월		600,000
	회의비	회의장사용료 등	360,000	2회		720,000
기타간접비용	소 계					7,185,875
	기타간접비용					7,185,875
간접비 합계						16,110,250
훈련비 총계						74,529,625

참고3

NCS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NCS 직종			기준단가 (단위: 원)	130%기준 (단위: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1. 사업관리	01. 사업관리	01. 프로젝트관리	5,579	7,252
		02. 해외관리	5,579	7,252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1. 경영기획	7,404	9,625
		02. 홍보·광고	7,080	9,204
		03. 마케팅	6,732	8,751
	02. 총무·인사	01. 총무	6,982	9,076
		02. 인사·조직	8,508	11,060
		03. 일반사무	5,995	7,793
	03. 재무·회계	01. 재무	6,956	9,042
		02. 회계	6,555	8,521
	04. 생산·품질관리	01. 생산관리	6,282	8,166
		02. 품질관리	7,161	9,309
03. 무역·유통관리		6,484	8,429	
03. 금융·보험	01. 금융	01. 금융영업	6,340	8,242
		02. 금융상품개발	6,039	7,850
		03. 신용분석	6,467	8,407
		04. 자산운용	6,043	7,855
		05. 금융영업지원	5,731	7,450
	02. 보험	06. 증권·외환	6,620	8,606
		01. 보험상품개발	7,436	9,666
		02. 보험영업·계약	6,913	8,986
		03. 손해사정	6,291	8,178
04. 교육·자연·사회과학	01. 학교교육	01. 학교교육	6,158	8,005
	02. 평생교육	01. 평생교육	6,167	8,017
		02. 평생교육운영	6,427	8,355
	03. 직업교육	01. 직업교육	6,585	8,560
02. 이러닝		6,506	8,457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01. 법무	6,688	8,694
		02. 지식재산관리	6,655	8,651
	02. 소방방재	01. 소방	6,209	8,071
		02. 방재	6,218	8,083
		03. 스마트재난관리	6,213	8,076
06. 보건·의료	01. 보건	01. 의료기술지원	4,514	5,868
		02. 보건지원	5,543	7,205
		03. 약무	4,514	5,868
	02. 의료	01. 임상의학	6,962	9,050
		02. 간호	5,775	7,507

NCS 직종			기준단가 (단위: 원)	130%기준 (단위: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3. 기초의학	6,166	8,015
		04. 임상지원	5,953	7,738
07. 사회복지·종교	01. 사회복지	01. 사회복지정책	6,268	8,148
		02. 사회복지서비스	6,618	8,603
	02. 상담	01. 직업상담서비스	6,427	8,355
		02. 청소년지도	6,432	8,361
		03. 심리상담	6,428	8,356
	03. 보육	01. 보육	6,221	8,087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1. 문화·예술	01. 문화예술경영	6,440	8,372
		02. 실용예술	6,679	8,682
		03. 공연예술	6,454	8,390
		04. 문화재관리	6,237	8,108
	02. 디자인	01. 디자인	5,619	7,304
	03. 문화콘텐츠	01. 문화콘텐츠기획	6,997	9,096
		02. 문화콘텐츠제작	6,231	8,100
		03. 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6,829	8,877
		04. 영상제작	5,724	7,441
	09. 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8,144
02. 철도운전·운송		01. 철도운전운영	6,650	8,645
		02. 철도시설유지보수	6,638	8,629
03. 선박운전·운송		01. 선박운항	8,147	10,591
		02. 검수·검량	6,847	8,901
04. 항공운전·운송		01. 항공기조종운송	7,126	9,263
		02. 항공운항	7,126	9,263
		03. 항행안전시설	7,126	9,263
10. 영업판매	01. 영업	01. 일반·해외영업	7,389	9,605
	02. 부동산	01. 부동산컨설팅	6,959	9,046
		02. 부동산관리	6,260	8,138
		03. 부동산중개	6,080	7,904
		04. 감정평가	6,524	8,481
	03. 판매	01. e-비즈니스	6,904	8,975
		02. 일반판매	6,767	8,797
		03. 상품중개·경매	6,836	8,886
	11. 경비·청소	01. 경비	01. 경비·경호	6,098
02. 청소·세탁		01. 청소	6,494	8,442
		02. 세탁	6,390	8,307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1. 이·미용	01. 이·미용서비스	6,468	8,408
	02. 결혼·장례	01. 결혼서비스	6,593	8,570
		02. 장례서비스	6,235	8,105
	03. 관광·레저	01. 여행서비스	6,501	8,451

NCS 직종			기준단가 (단위: 원)	130%기준 (단위: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2. 숙박서비스	7,882	10,246
		03. 컨벤션	6,447	8,381
		04. 관광레저서비스	6,200	8,060
	04. 스포츠	01. 스포츠용품	6,595	8,573
		02. 스포츠시설	6,528	8,486
		03. 스포츠경기·지도	6,499	8,448
		04. 스포츠마케팅	6,538	8,499
05. 레크리에이션		6,580	8,554	
13. 음식서비스	01. 식음료조리·서비스	01. 음식조리	7,595	9,873
		02. 식음료서비스	7,696	10,004
		03. 외식경영	7,618	9,903
14. 건설	01. 건설공사관리	01. 건설시공전관리	7,210	9,373
		02. 건설시공관리	7,203	9,363
		03. 건설시공후관리	7,346	9,549
	02. 토목	01. 토목설계·감리	7,529	9,787
		02. 토목시공	7,587	9,863
		03. 측량·지리정보개발	6,798	8,837
	03. 건축	01. 건축설계·감리	6,545	8,508
		02. 건축시공	6,330	8,229
		03. 건축설비설계·시공	6,318	8,213
	04. 플랜트	01. 플랜트설계·감리	6,454	8,390
		02. 플랜트시공	6,128	7,966
		03. 플랜트사업관리	6,291	8,178
	05. 조경	01. 조경	6,787	8,823
	06. 도시·교통	01. 국토·도시계획	6,598	8,577
		02. 교통계획·설계	6,598	8,577
		03. 주거서비스	6,598	8,577
	07. 건설기계운전·정비	01. 토공기계운전	7,252	9,427
		02. 기초공건설기계운전	7,155	9,301
		03. 콘크리트공기계운전	7,155	9,301
		04. 적재기계운전	7,155	9,301
		05. 양중기계운전	7,325	9,522
		06. 건설기계정비	7,330	9,529
	08. 해양자원	01. 해양환경조사	6,675	8,677
		02. 해양환경관리	6,675	8,677
03. 해양플랜트설치·운영		6,675	8,677	
04. 해양자원개발·관리		7,321	9,517	
05. 잠수		6,675	8,677	
15. 기계	01. 기계설계	01. 설계기획	6,370	8,281
		02. 기계설계	5,980	7,774
	02. 기계가공	01. 절삭가공	6,097	7,926

NCS 직종			기준단가 (단위: 원)	130%기준 (단위: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 재료	03. 기계조립·관리	02. 특수가공	6,289	8,175	
		01. 기계조립	6,112	7,945	
	04. 기계품질관리	02. 기계생산관리	6,081	7,905	
		01. 기계품질관리	6,186	8,041	
	05. 기계장치설치	01. 기계장치설치·정비	6,874	8,936	
		02. 냉동공조설비	7,434	9,664	
		03. 이륜차정비	7,154	9,300	
	06. 자동차	01. 자동차설계	5,496	7,144	
		02. 자동차제작	6,008	7,810	
		03. 자동차정비	5,956	7,742	
		04. 자동차정비관리	6,008	7,810	
		05. 자동차관리	5,940	7,722	
	07. 철도차량제작	01. 철도차량설계·제작	6,372	8,283	
		02. 철도차량유지보수	6,129	7,967	
	08. 조선	01. 선박설계	6,032	7,841	
		02. 선체건조	6,219	8,084	
		03. 선박의장생산	5,920	7,696	
		04. 선박품질관리	5,603	7,283	
		05. 선박생산관리	5,570	7,241	
		06. 시운전	5,563	7,231	
		07. 선박정비	5,886	7,651	
		08. 레저선박	5,828	7,576	
	09. 항공기제작	01. 항공기설계	7,231	9,400	
		02. 항공기제작	7,115	9,249	
		03. 항공기정비	6,560	8,528	
		04. 항공장비관리	7,400	9,620	
	10. 금형	01. 사출금형	6,014	7,818	
		02. 프레스금형	6,014	7,818	
		03. 다이캐스팅금형	6,014	7,818	
	11. 스마트팩토리	01. 스마트팩토리설계	6,175	8,027	
	01. 금속재료	01. 금속엔지니어링	6,519	8,474	
		02. 금속재료제조	6,519	8,474	
		03. 금속가공	6,737	8,758	
		04. 표면처리	6,897	8,966	
		05. 용접	7,250	9,425	
		06. 비철금속재료제조	6,769	8,799	
		02. 요업재료	01. 파인세라믹제조	6,682	8,686
			02. 전통세라믹제조	6,682	8,686

NCS 직종			기준단가 (단위: 원)	130%기준 (단위: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7. 화학	01. 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01. 화학물질관리	6,265	8,144
		02. 화학공정관리	5,999	7,798
		03. 화학제품연구개발	6,233	8,102
	02. 석유·기초화학물질제조	01. 석유·천연가스제조	7,000	9,100
		02. 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	6,200	8,060
		03.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	6,400	8,320
	03. 정밀화학제품제조	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6,752	8,777
		02.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7,000	9,100
		03. 바이오의약품제조	7,000	9,100
		04. 바이오화학제품제조	7,000	9,100
	04. 플라스틱·고무제품제조	01. 플라스틱제품제조	7,000	9,100
		02. 고무제품제조	7,000	9,100
	18. 섬유·의복	01. 섬유제조	01. 섬유생산	6,215
02. 섬유가공			6,221	8,087
03. 섬유생산관리			6,215	8,079
02. 패션		01. 패션제품기획	6,428	8,356
		02. 패션제품생산	6,048	7,862
		03. 패션제품유통	6,533	8,492
		04. 신발개발·생산	7,812	10,155
19. 전기·전자	01. 전기	01. 발전설비설계	8,997	11,696
		02. 발전설비운영	6,270	8,151
		03. 송배전설비	8,966	11,655
		04. 지능형전력망설비	6,192	8,049
		05. 전기기기제작	6,141	7,983
		06. 전기설비설계·감리	6,205	8,066
		07. 전기공사	6,547	8,511
		08. 전기자동제어	6,351	8,256
		09. 전기철도	6,631	8,620
		10. 철도신호제어	6,389	8,305
		11. 초임계CO ₂ 발전	6,655	8,651
		12. 전기저장장치	6,655	8,651
		13. 미래형전기시스템	6,386	8,301
	02. 전자기기일반	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7,541	9,803
		02. 전자부품기획·생산	6,019	7,824
		03. 전자제품고객지원	7,298	9,487
	03. 전자기기개발	01. 가전기기개발	6,022	7,828
		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5,968	7,758
		03. 정보통신기기개발	5,949	7,733
04. 전자응용기기개발		6,240	8,112	
05. 전자부품개발		6,659	8,656	

NCS 직종			기준단가 (단위: 원)	130%기준 (단위: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6. 반도체개발	6,089	7,915		
		07. 디스플레이개발	6,306	8,197		
		08. 로봇개발	6,294	8,182		
		09. 의료장비제조	6,207	8,069		
		10. 광기술개발	6,174	8,026		
		11. 3D프린터개발	6,174	8,026		
		12. 가상훈련시스템개발	6,189	8,045		
		13. 착용형스마트기기	6,189	8,045		
		14. 플렉시블디스플레이개발	6,189	8,045		
		15. 스마트팜개발	6,189	8,045		
		16. OLED개발	6,189	8,045		
		17. 커넥티드카개발	6,189	8,045		
		20. 정보통신	01. 정보기술	01. 정보기술전략·계획	7,324	9,521
				02. 정보기술개발	6,588	8,564
				03. 정보기술운영	6,590	8,567
				04. 정보기술관리	6,590	8,567
				05. 정보기술영업	6,017	7,822
06. 정보보호	6,574			8,546		
07. 인공지능	6,574			8,546		
08. 블록체인	6,574			8,546		
02. 통신기술	01. 유선통신구축		6,130	7,969		
	02. 무선통신구축		5,932	7,711		
	03. 통신서비스		6,202	8,062		
	04. 실감형콘텐츠제작		6,088	7,914		
03. 방송기술	01. 방송제작기술		6,042	7,854		
	02. 방송플랫폼기술		9,607	12,489		
	03. 방송서비스		6,460	8,398		
2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9,825	12,772		
		02. 식품저장	6,129	7,967		
		03. 식품유통	6,671	8,672		
	02. 제과·제빵·떡제조	01. 제과·제빵·떡제조	6,797	8,836		
22. 인쇄·목재·가구·공예	01. 인쇄·출판	01. 출판	6,288	8,174		
		02. 인쇄	6,282	8,166		
	02. 공예	01. 공예	7,971	10,362		
		02. 귀금속·보석	7,813	10,156		
23. 환경·에너지·안전	01. 산업환경	01. 수질관리	8,497	11,046		
		02. 대기관리	8,758	11,385		
		03. 폐기물관리	8,789	11,425		
		04. 소음진동관리	8,960	11,648		
		05. 토양·지하수관리	8,971	11,662		

NCS 직종			기준단가 (단위: 원)	130%기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2. 환경보건	01. 환경보건관리	9,123	11,859
	03. 자연환경	01. 생태복원·관리	7,538	9,799
	04. 환경서비스	01. 환경경영	8,437	10,968
		02. 환경평가	8,472	11,013
	05. 에너지·자원	01. 광산조사·탐사	9,912	12,885
		02. 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9,266	12,045
		03. 광산환경관리	6,732	8,751
		04. 광산보안	6,378	8,291
		05. 신재생에너지생산	7,170	9,321
		06. 에너지관리	7,349	9,553
	06. 산업안전	01. 산업안전관리	6,184	8,039
		02. 산업보건관리	7,889	10,255
		03. 비파괴검사	6,376	8,288
	24. 농림어업	01. 농업	01. 작물재배	6,992
02. 종자생산·유통			7,676	9,978
03. 농촌개발			8,587	11,163
02. 축산		01. 축산자원개발	5,968	7,758
		02. 사육관리	6,252	8,127
03. 임업		01. 산림자원조성	7,100	9,230
		02. 산림관리	8,715	11,329
		03. 임산물생산·가공	8,748	11,372
04. 수산		01. 어업	6,473	8,414
		02. 양식	5,673	7,374
		03. 수산자원관리	5,673	7,374
		04. 어촌개발	8,255	10,731

수준	개 념
8수준	-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 (경력)수준7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7수준	-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접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 (경력)수준6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6수준	-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경력)수준5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5수준	-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지식기술)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경력) 수준4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4수준	-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수준	개 념
	<p>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술)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역량)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경력) 수준3에서 1-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3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경력) 수준2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2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경력) 수준1에서 6-12개월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1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지식기술)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역량)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